

시론



이헌

-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검찰 대학살 有感

무엇이 그리도 급한 것인지 새해 벽두에서 둘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좌천하고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요직에 중용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하였다.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1·8 검찰 대학살,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현직인 부장검사와 진보성향의 부장판사도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이다.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며 그 비판에 가세하였다.

법무부는 ‘공석 내지 사직에 의한 결원충원, 통상적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강변하였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기적인 인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번 검찰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로서, 그 내용은 물론이고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6일밖에 되지 아니하여 검찰 인사에 관한 업무파악이 될 수도 없는 시기에, 더욱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임명 당시 해당 검찰 고위간부의 인사가 있었는데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강행한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도 통상적이거나 정기적인 인사라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4년 1월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사이에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갈등을 빚은 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인사의 객관화와 공정화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검찰총장 제외 검사 직급 일원화, 검사동일체의 원칙 삭제 및 검사의 이의제기권 명문화’등 검찰개혁방안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협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위 조항의 개정 당시 소관업무를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바로 문 대통령이었고,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때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관여하였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였다.

위 조항의 개정 이후 검사의 보직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 인사 초안 작성 →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와 장관 제청 → 대통령 재가>의 순서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고위직 인사도 마찬가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검찰인사의 과정은, 종전의 프로세스와는 달리 검찰측에서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하였다가, 법무부측은 검찰측이 요청하는 법무부의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면서 보내주지 않다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였다가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를 협의한다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행동에 대

해 도리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력과 지위를 누린 것이다”고 하였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다”고 하였다.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개혁방안으로 입법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검사 인사협의 절차조항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 분명한 이상, 문 대통령의 위 발언은 본인이 관여한 입법과정이나 대선 후보자 당시 등의 발언을 망각하거나 무슨 말이 맞는지 헛갈리게 하는 일구다언(一口多言)인 셈이다. 무엇보다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게 ‘초법적 권력’이라는 시민운동가적 용어나 ‘명, 거역’ 따위의 왕조시대 비속어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는 데에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리수사 등에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물론이고, 이번 검찰인사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도 연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훼손하는 부정선거나 관권선거는 절대로 용납되지 아니한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집권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범국민적인 심판과 항거 내지 ‘사회에 대한 반정(反正)’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정권의 충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수사대상인 인물들이 합세하여 수사하는 검사들을 몰아낸 격이자,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빌미로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재량권을 가진 임용권자라도 보복적 감정 등으로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에 대한 강제면직에 관하여 “직권남용죄 인정을 넘어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필자가 소속된 변호사단체 및 야당은 추 장관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검찰인사는 그 내용적으로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퇴를 야기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검사 해임 등 사법방해 사례와 같이, 헌법상 탄핵사유인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번 검찰인사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공무원이라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은 확고한 법리이다. 이번 검찰인사가 시가지적·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하게 위법한 사법방해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윤 총장의 관계법률과 종전 관

례에 따른 적법·타당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강구될 여지는 없는 일이다. 만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 제재처분, 나아가 관련수사팀 해체 등으로 이어져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결국 “현 정부 인사들 구하기, 검찰의 정권 주구(走狗) 만들기”식의 그야말로 초법적인 사법방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위선과 불공정의 민낯이 드러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였던 6,000여명의 교수들은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산 권력 수사하는 검찰해체 반대” 등을 외쳤다. 이번 검찰인사를 포함하여 현 정부의 편향된 이념에 따른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전반의 파탄적 상황과, 국가 전체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반헌법적 입법의 일방통과, 그리고 얼마전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에 관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등 반법치적 행태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결정 당시 관시한 아래 결론 요지로써 정리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이러한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2016헌나1)”